※ 근로계약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작성하여 제출

|  |
| --- |
| **고 용･임 금 확 인 서** |
| 피고용자 | 성 명 |  | **생년월일** |  |
| 주 소 |  |
| 고 용 성 격(피고용자하는일구체적으로기재) |  |
| 고 용 기 간 |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|
| 임 금 지 급 형 태 | 일당제 | 1 일 임 금 : 원 |
| 월평균 고용일수 : 일 |
| 월 평균 급여 : 원(최근3개월) |
| 월급제 |  | 월분 | 월분 | 월분 |
| 기 본 급 |  |  |  |
| 각 종 수 당 |  |  |  |
| 기 타 금 액(여비, 자동차유지비 등) |  |  |  |
| 합 계 금 액 |  |  |  |
|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| □ 가 입 □ 미 가 입 |
|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.년 월 일사 업 장 명 :사 업 장 주 소 :사업자등록번호 : 전화번호 :(영업허가번호)사 업 주 명 : (날인) |
| ※ ｢국민기초생활 보장법｣ 제49조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, 1,000만원 이하의 벌금･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. |